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3005 판결 [분양계약금 반환청구]

재판경과

서울고등법원 2018. 6. 20 선고 2018나200300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575152 판결

전문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국제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8. 5. 9.

판결 선고2018. 6. 20.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6가합575152 판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0.부터 2011.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1. 4. 30.까지는 연 11%의, 그 다음날부터 2011. 6. 30.까지는 연 14%의, 그 다음날부터 2011.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1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 제1심 판결문 제5면 제7행(박스 부분 포함)의 '2,350,000,000원을 감액·변경하고'를 '2,350,000,000원으로 감액·변경하고'로 고친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9행의 '규정하고 있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원고는 위와 같은 특약사항들이 반사회적이고 이율배반적일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도 반하므로 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와 같이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 제1심 판결문 제8면 마지막행의 '타당하다' 뒤에 다음과 같은 설시를 추가한다.

『(그와 달리 이 사건 사업의 실제 사업주체를 피고로 본다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분양계약 상대방당사자에 대한 급부义务的 이행으로서 계약금을 지급한 후 분양계약의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고 있는바, 그 원상회복의무의 직접적인 귀속주체는 '분양계약의 상대방당사자'라 할 것이지 '분양사업의 사업주체'로 볼 것은 아니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장석조

판사강완수

판사노재호